

필수유지업무 유지·운영 수준 등 결정에 대한 재심신청서

※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“√” 표시를 하기 바라며,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.

(앞쪽)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기간
------	-----	------

재심신청인	[] 노동조합	[] 사용자
-------	----------	---------

노동조합	조합명	대표자
	소재지	(전화번호:)

사용자	사업장명	대표자
	소재지	(전화번호:)

초심사건

○○지방노동위원회 . . . 결정, 사건번호

초심결정서 수령일

재심신청 취지 및 이유(별지 작성 가능)

위 노동관계 당사자 간에 발생한 필수유지업무협정이 체결되지 못한 것과 관련하여 ○○지방노동위원회가 한 필수유지업무 유지·운영 수준 등의 결정은 위(별지)에 적은 이유와 같이 [] 위법한 (의한) 것이라고 [] 월권에 인정되므로 「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」 제42조의4제5항, 제6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제8호에 따라 재심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재심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중앙노동위원회 귀하

※ 비교: 작성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하기 바랍니다.

수수료
없음

처리절차

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.

